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06-08

서 울 고 등 법 원

제 11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19누5763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원고, 항소인	A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
	소송대리인 법무법인 [redacted]
	담당변호사 [redacted], [redacted]
피고, 피항소인	[redacted]시 [redacted]구청장
제 1 심 판 결	서울행정법원 2019. 9. 6. 선고 2018구합69783 판결
변 론 종 결	2020. 3. 25.
판 결 선 고	2020. 4. 29.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가 2018. 4. 26.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585,954,430원, 지방교육세 33,483,110원, 가산세 91,673,390원(취득세 가산세 89,885,400원, 지방교육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06-08

세 가산세 1,787,990원)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 등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,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,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(별지 부분을 포함하되, '3. 결론' 부분은 제외) 기재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○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행의 "구 '도정법'이라 한다"를 "'구 도정법'이라 한다"로, 제11행의 "도정법"을 "구 도정법"으로, 이하 제1심 판결문 상의 "도정법"을 "구 도정법"으로 모두 고친다.

○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0행의 "부합한다."를 "부합한다(대법원 2003. 1. 24.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)."로, 제21행의 "있다(도정법 제6조 제4항)."를 "있고(구 도정법 제6조 제4항), 어느 방법을 택하느냐에 따라 보류지 또는 체비지가 될 수 있는 요건이 달리 규정되어 있다."로 고친다.

○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9행의 "보류지"를 "보류지(건축물을 포함한다)"로 고친다.

○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6행의 "되므로"를 "되므로(구 도정법 제43조 제2항, 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, 구 도정법 제54조 제2항, 제55조 제2항)"으로 고친다.

○ 제1심 판결문 제8쪽 마지막 행의 "전부개정되기 전의 것"을 "전부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'도시정비조례'라고 한다"로 고친다.

○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6행부터 제9쪽 제10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06-08

『가)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, 이 사건 152세대를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보기 어렵고, 일반분양분으로서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간주된다고 보기도 어렵다.

① 원고는 이 사건 152세대를 관리처분계획상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지정하지 아니하였다.

②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중 '분양'부분 1,021세대와 '임대'부분 200세대를 구분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, 이 사건 152세대는 '임대'부분으로 인가받은 이 사건 임대주택에 포함된다.

③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인가조건으로 [redacted]시에 이 사건 임대주택 및 부속 지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였는바, 이는 구 도정법령 및 도시정비조례에 의하여 공급이 강제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.

④ 원고는 '분양'부분 1,021세대 중 일반분양 655세대와 '임대'부분 200세대를 구분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, 일반분양과 이 사건 152세대가 포함된 이 사건 임대주택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.』

○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6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.

『다)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, 이를 다투는 원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.』

2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.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,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06-08

재판장 판사 [redacted]

판사 [redacted]

판사 [redacted]